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예금거래기본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9조의2 (휴면예금 및 출연) ① 저축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(이하 '휴면예금'이라 한다)으로 본다.</p> <p>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</p> <p>나. 거치식,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9조의2 (휴면예금 및 출연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,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.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.</p>